공정무역 전시 · 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16년 3월 일 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 3. 21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제172호)

나. 회부일자 : 2016. 3. 21.

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
【2016. 3. 24.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)

가. 제안이유

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정무역 전시·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무역 사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O 위탁대상 현황

- 건 물 명 : 공정무역 전시·홍보관

- 위 최 : 성북구 동선동1가 85-102

- 규 모 : 대지 108.3m², 연면적 67.37m²(지상2층)

- 시설내용

층 별	면적(㎡)	주 요 시 설	비고
1층	37.77	워크숍, 모임방, 교육장, 간이주방	
2층	29.60	공정무역 제품 전시 및 판매장, 피팅룸, 창고	

※ 대상시설은 2015년 10월 착공하여 2016년 3월 준공 예정임

O 위탁기간 :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

O 위탁방법 :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

O 위탁사업의 범위 : 공정무역 전시·홍보관 운영 및 시설관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동성)

- 가. 본 동의안은 2016년 5월 개소 예정인 "공정무역 전시·홍보관"의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따라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나. 관련 법규를 보면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에, "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25조에 "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는 바,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,

같은 조례 제25조 제2항에 "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"고 규정되어 있고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6호의 민간위탁사무 내용에 공정무역 운영 및 관련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바, 공정무역 홍보·전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판단됨.

다. 위탁기간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제2항 "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" 는 규정에 따라 3년 이내로 하고.

위탁방법은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 "성북구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" 라는 규정에 의거 추진 하려는 것임.

- 라.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정무역 홍보·전시관의 운영을 민간위탁 사무로 운영함은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없음」
- 5. 토론요지: 「없음」
- 6. 심사결과: 「원안가결」
- 7. 소수의견의 요지: 「없음」
- 8. 기타 필요한 사항
 - O 관계법령
 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 -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5조
 -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